
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44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9. 11.

발 의 자 : 황주홍 · 이찬열 · 장정숙
이언주 · 박주현 · 위성곤
금태섭 · 박지원 · 유성엽
박명재 · 최도자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. 한편, 최근 「형법」이 개정(2016. 1. 6. 개정, 2018. 1. 7. 시행)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·금고의 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.

이와 관련하여, 개정 「형법」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.

이에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3호).

법률 제 호
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호 중 “형”을 “금고 이상의 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<u>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</u>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9조(결격사유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금고 이상의 형</u>----- 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